

지구총재 징계 방침

지구총재 임무의 불이행 및/또는 국제헌장 및 부칙,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, 지구 헌장 및 부칙, 국제이사회 방침 조항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지구총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경우, 지구총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지구총재 징계는 지구총재의 권리, 특권,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.

1. 협회 회원 또는 일반인의 피해를 방지하고, 협회의 이미지를 보호하고, 국제헌장 및 부칙 또는 국제이사회 방침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지구총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,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법률부 부장과 상의하여 지구총재에게 일시적 징계를 명할 수 있다. 지구총재의 일시적 징계는 국제이사회 후속 회의에서 또는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다 일찍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해야 한다.
2.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은 본 방침에 따라 서면 요청서를 법률부에 제출할 수 있다. 요청서에는 지구 내 굿 스탠딩 클럽의 과반수가 본 요청의 제기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. 요청서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한다:
 - a. 동일한 지구총재 관련 항의에서 제기된 동일한 문제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없어야 한다.
 - b. 최초로 요청서 제출 시, 항의의 사유를 기술한 항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.
 - c. 항의에 대한 지구총재의 답변서와 증빙서류는 최초의 항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법률부에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한다.
 - d.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과 지구총재는 항의서/답변서 및 모든 증빙서류를 상대방에 동시에 법률부에 제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 - e. 모든 문서는 국제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들과 국제이사회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국제본부 법률부로 전달되어야 한다.
 - f. 여기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, 본 절차에서 명시된 모든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, 헌장 및 부칙 위원회 위원장이나 국제이사회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- g. 징계 요청 및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면 변론서나 문서들은 헌장 및 부칙 위원회와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하고, 회의 후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서면 결정문을 공표한다. 국제이사회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.
 - h. 본 방침에 따라 국제이사회 구성원 (또는 그 대리인)도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 - i. 국제이사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, 항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.
3. 지구총재가 본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시,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총재가 정직된 기간 동안의 징계 처분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각 이사회의 국제이사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:
- a. 활동정지 이후, 국제이사회가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지구총재를 해임,
 - b. 활동정지 이후, 소속 클럽이 지구총재를 해임,
 - c. 지구총재가 사임, 또는
 - d. 지구총재의 임기 만료

본 방침이 국제헌장 제5조 9항에 명시된 해임 조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.